

보건관리대행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순천향의과대학 남택승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최대한 유지·증진시키며 아울러 특수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므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고 나아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특히 1990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300인 이하의 중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5.4%나 되며 이들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사업주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산업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학력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문제를 체계적이고도 지속적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는 일은 산업보건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노동부 예규 제 180호를 제정, 공포하여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 300인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나 공단을 중심으로 보건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운 보건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대적 요청에 의해 성급하게 안전관리대행에 준하는 방법으로 접근함으

로써 보건관리의 특성인 다양성, 자율성, 복합성 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행요원을 위한 직무교육이 없었고 업무지침이 미흡할 뿐 아니라 대행을 위탁하는 사업장의 여건이 다르며,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력, 시설, 접근방법도 공통된 방향 설정없이 그 기관의 실정에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형식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분야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해온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보건관리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관리대행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공통된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산업보건관리란 산업보건의 궁극적 목표인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산업보건의 원리에 지역사회의학 또는 일차보건의료 접근법을 접목시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하에 가장 많은 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본 협회가 중심이 되어 보건관리대행 협의회를 조직하여 모든 기관들이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토대로 업무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방법, 인력 시설 등에 관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둘째, 본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보

**“보건관리대행 제도는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질 때 비로소 열매맺게 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이를 지원하는
정부도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전 관련분야의 Team Work이 절실히 요망된다. 본인이 생각하건대 의사가 보건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리더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행업무의 지속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산업보건 간호사들이 일선요원으로서 사업장내의 각종 보건문제를 발견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의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여 Team Work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향후 이 세 분야의 Team Work이 어떻게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본 제도가 얼마나 빨리 정착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세 분야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세째, 본 제도의 방향이 설정되고, Team Work을 위한 공동노력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대행인력의 직무교육이라 하겠다.

물론 각 기관들이 맡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틀에만 국한시켜, 본 업무를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지만 새로운 제도이므로 설정된 방향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각 대행인력별 직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네째, 위의 모든 방법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의 특성상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현행 법규상 인력기준, 출장회수 등 법적인 미비점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보완되어져 본 제도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제도는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질 때 비로소 열매맺게 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이를 지원하는 정부도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사업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어도 결코 단기간 내에 좋은 결과(output)가 산출될 수 없듯이 본 사업도 사업주의 인식이 바뀌고 근로자들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행기관들의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서서히 자리잡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할수록 둘러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의 활성화만이 중소 영세사업장이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재인식하고 산업보건 일선요원인 우리들이 향후 배가의 노력으로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하겠다.